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2. 장 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점 상하오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 지 일 : 2022년 9월 22일(목)
- 통지대상 : 이사 10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지출 심의의 건
 이랜드월드 리조트 회원권 기부에 따른 자산 취득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하당노인복지관 재수탁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4. 출석임원 : 전준수, 정영일, 정순둘, 김광영, 최동주, 신경섭, 전승만, 손병덕, 최미경, 이경림 (이사 10명)
 이천화, 이창구 (감사 2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영일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10명 중 10명(전준수, 정영일, 정순둘, 김광영, 최동주, 신경섭, 전승만, 손병덕, 최미경, 이경림) 감사 2명 중 2명(이천화, 이창구)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전준수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정영일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김광영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2022년 주요성과 및 법인운영 주요현안 보고

김 육 본부장이 법인의 2022년 주요성과 및 법인운영 주요현안을 보고하다.

8. 안건보고 및 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준수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김 육 본부장이 보조금 및 사업수입금, 후원금 등의 예산 변동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580,994	3,572,264	△8,730
마포데이케어센터	499,560	495,000	△4,560
창전데이케어센터	585,058	614,695	29,637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4,373,758	4,338,818	△34.940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5,655,438	5,722,446	67,008
서구노인종합복지관	5,900,174	5,880,474	△19,70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2,544,985	2,519,389	△25,596
남목노인복지관	2,031,307	2,040,359	9,052
봉화군노인복지관	3,029,200	2,944,572	△84.628

김광영 이사의 동의와 최동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전준수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김 육 본부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 항목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하는 행정적 소요를 줄이고자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의 비급여 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기관별 「내부운영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기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마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 중랑데이케어센터, 강동데이케어센터,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남목치매보호센터 총7개 기관임을 설명하다.

- 마포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 【이용료】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 【이용료】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중랑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 【이용료】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강동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 (이용료)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 (이용료) ①단. 요양보험수가는 공단 변경금액에 따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14조 제5항 【이용료】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등외자는 서비스 이용 악월에 후납 하도록 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	---

• 남목치매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이용 관리 규정 제7조【이용료】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비급여 항목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정순둘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지출 심의의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신경섭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지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4호 의안> 이랜드월드 리조트 회원권 기부에 따른 자산 취득의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동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월드 리조트 회원권 기부에 따른 자산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하당노인복지관 재수탁 심의의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제 6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최동주 이사의 동의와 최미경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7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최동주 이사의 동의와 최미경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9.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최미경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신경섭 이사가 재청하여 전준수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2시 30분

2022년 9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전준수 (인)



대표이사 정영일 (인)



이 사 정 순 둘



이 사 김 광 영



이 사 최 동 주



이 사 신 경 섭



이 사 전 승 만



이 사 손 병 턱



이 사 최 미 경



이 사 이 경 림



감 사 이 천 화



감 사 이 창 구

